

1994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(案)

提出日字 : 95. 10. 4

議案番號	38
------	----

提出者 : 沙下區廳長

1. 提案 理由

地方自治法 제125조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제38조의 規定에 의거 前年度 歲入, 歲出 決算에 대하여 議會의 承認을 일고자 함.

2. 主要 內容

가. 歲入 決算 總括

(단위: 백만원)

구	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미수납액
합	계	75,658	81,868	76,761	5,107
일	반 회 계	69,355	73,960	69,981	3,979
과 목	지 방 세	15,473	16,660	15,563	1,097
	세 외 수 입	24,028	27,674	24,792	2,882
	조 정 교 부 금	19,567	19,567	19,567	0
	보 조 금	10,017	9,929	9,929	0
	지 방 채	270	130	130	0
목	별 회 계	6,303	7,908	6,780	1,128
과 목	영세민생활안정기금	250	354	342	12
	의료보호기금	2,507	2,583	2,510	73
	새마을사업소득	129	129	124	5
	주차장특별회계	892	2,266	1,228	1,038
	주거환경개선사업	825	876	876	0
	장립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	1,700	1,700	1,700	0

나. 歲出 決算 總括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	예산액	예산성립 후증감액	예산현액	지출액	익년도 이원액	불용액
합 계		66,423	9,235	75,658	56,270	13,572	5,816
일 반 회 계		60,120	9,235	69,355	51,459	12,880	5,016
과 목	의 회 비	668	0	668	603	0	65
	일 반 행 정 비	19,335	989	20,324	18,336	1,159	829
	사 회 복 지 비	13,695	377	14,072	13,094	403	575
	산 업 경 제 비	945	67	1,012	916	0	96
	지 역 개 발 비	22,636	7,577	30,213	17,086	10,201	2,926
	문화 및 체육비	1,770	260	2,030	855	1,117	58
	민 방 위 비	126	0	126	101	0	25
	지원 및 기타정비	945	△35	910	468	0	442
특 별 회 계		6,303	0	6,303	4,811	692	800
과 목	영세민생활안정기금	250	0	250	209	0	41
	의료보호기금	2,507	0	2,507	2,499	0	8
	새마을사업소득	129	0	129	50	0	79
	주차장특별회계	892	0	892	269	0	623
	주거환경개선사업	825	0	825	791	24	10
	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	1,700	0	1,700	993	668	39

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

4. 덧 붙 임 : '94 세입,세출 결산서 및 결산 검사 의견서

決算檢査 意見書

釜山廣域市沙下區廳長 귀하

○ 本人等은 地方自治法第125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

釜山廣域市 沙下區의 1994年 自治區 歲入歲出決算書와

同附屬書類, 會計帳簿 및 關聯證憑書類를 檢査하였습

니다.

○ 이 檢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本人等은 地方自治法

施行令第47條에 列舉된 事項을 檢査範圍로 하여 自治

區議會의 決算 檢査時 着眼事項(사의사13130-99)과 會

計監査基準을 遵守하였습니다.

本人等の 檢査 結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I. 歳入分野

1. 未收納額에 대하여

○ '94年度 未收納額は 5,088,279千원으로 歳入豫算額の 7.66%에 달하며, 이는 前年度보다 42.05% 増加率을 보여, '93年度 増加率 30.74%보다 크게 増加하고 있습니다.

또한, 過年度 未收納額에 대한 收納額 比率이 10%에도 못미치며, 나머지는 계속 累積되어 가므로 未收納額에 對한 特別對策을 講究해야 합니다.

2. 滯納額 管理 臺帳의 整備

○ 滯納額의 管理는 地方財政法第108條2項에 의거 關聯帳簿를 作成 備置하여, 未收納 事由, 回收 및 變動事項등의 把握에 徹底를 기해야 하나, 臺帳 整理 및 管理가 일부 부실하여 關聯滯納額의 實在性 確認이나, 回收 可能性 검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整備 및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Ⅱ. 歳出分野

1. 歳出豫算 轉用額에 대하여

○ 前年度 豫算 轉用額이 25,491千원이었으나
當該 年度에는 豫算額의 2.46%에 該當하는
1,477,452千원이며, 轉用의 主要 內容은 道路
開設 및 擴張工事時의 補償費, 移住費의 不足
에 起因한 것으로 이는 豫算編成時 보다 正確
한 計上이 要求됩니다.

2. 歳出豫算 科目別 支出에 있어서

○ 區民의 날 行使費, 庶務管理費等の 支出額중
一部金額이 年度中에 豫算配定額을 超過하여
支出된 事實이 있습니다.

Ⅲ. 위에서 지적한 事項을 除外하고는 釜山廣域市

沙下區의 1994年 財政運營은 收支均衡이 취해진 堅實

하고 計劃的이며 長期的 觀點에서 彈力的인 財政構造

를 確保하기 위해 充分한 努力이 傾注되었으며, 積極

的인 財政運營이었다고 認定합니다.

釜山廣域市 沙下區

決算檢査代表委員

金 成 燁



決算檢査委員

朴 洪 宙



決算檢査委員

孫 益 相

